

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“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의 표준물질 사용에 관한 추가기술요건”(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-196호(2008. 04. 30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2년 2월 17일

기술표준원장

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의 표준물질 사용에 관한 지침 개정

구분	규격번호	규격명	규격내용
개정	KOLAS-G-014	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의 표준물질 사용에 관한 지침	별첨

[별첨] : 1. 개정전문(KOLAS-G-014)

2. 신규대조표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폐지고시)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의 표준물질 사용에 관한 지침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-196호(2008. 04. 30)는 폐지하며, 종전의 지침에 따른 기타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